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02
----------	------

2021년 5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임종국 의원 외 19명
- 나. 제출일 : 2021년 4월 2일
- 다. 회부일 : 2021년 4월 6일
- 라. 상정일 :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년 4월 29일 상정·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임종국 의원)

가.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며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명시(안 제1조)

- 준용규정인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1조)
-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상 강화(안 제7조)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 변경(안 제8조)
-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및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제2항)
-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 효과적인 국제부담금 지원과 집행을 도모하고, 성과 기반의 세계스마트 시티기구 사무국 운영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 변경(안 제17조)
-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상 조항 신설(안 제2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 사항 없음.

다. 입법예고 (2021. 4. 9. ~ 4.16.) 결과 :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

가. 조례 개정 취지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¹⁾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11조),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안 제7조 및 제8조),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안 제12조, 제13조의2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 〉

조 문	주 요 내 용
제1조(목적)	-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명시
제2조(정의)	-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반영
제3조(기본원칙)	- 지능정보사회 실현과 발전 기본원칙 신설(제4호)
제5조(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 수립 5년 → 3년(제1항),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반영(제3항)
제7조(위원회 설치 등)	- 위원장 1명 → 2명으로 공동위원장(시장도 위원장), 위원 25명 이내 → 30명 이내(제1항) -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제3항제2호)
제8조(위원회 운영)	-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 권한 추가
제9조(분과위원회)	- 알기쉬운 법령 기준 반영(호선 → 호선(互選))
제11조(스마트도시책임관)	-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제12조(부문별 정책의 추진)	-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근거 조항 신설(제2항)
제13조의2(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정)	-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 규정 신설
제17조(세계스마트시티지구 지원)	- 성과 기반의 세계스마트시티지구 사무국 운영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규정 변경

1) 법률 제17344호, 전부개정 2020.6.9., 시행 2020.12.10.

제1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운영)	- 알기쉬운 법령 기준 반영(호선 → 호선(互選))
제25조(포상)	-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상 규정 신설
부칙	- 기본계획과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 신설

○ 안 제2조, 제5조, 제11조 등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의 제명 변경사항(「국가정보화 기본법」 ⇒ 「지능정보화 기본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 적합성 및 입법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4차 산업혁명 지원을 위한 범국가적 추진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데이터·인공지능 등 핵심기술 기반과 산업생태계를 강화하는 한편, 정보통신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등을 실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0년 6월 9일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되었음.

- 특히, 전부개정된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국가정보화 기본법」과 비교하면 제4조2)에서 지방자치단체에도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책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를 본 개정조례안에 반영하여 서울시가 지능정보사회 실현을 위한 정책 수립·추진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고도화 및 활용을 제약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 ③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이용할 때 안전성·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화로 발생·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환경 변화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나. 세부내용 검토

1)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동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마트도시법”) 제19조제6항³⁾에 따라 조례로 정한 것이므로 이를 목적규정에 표시하여 조례의 근거를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가 있었음.⁴⁾

-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스마트도시법」, 「지능정보화 기본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본 조례는 입법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법령의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의 입법 목적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한 문장을 말함. 목적 규정은 그 법령이 달성하려는 목적 등을 밝혀 일반국민이 입법 목적이나 입법 취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 2019.12, 47면 참조).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스마트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제1조(목적)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u>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u>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 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등)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운영계획의 수립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4) 고재종 등, 『서울특별시 조례 정비 모델 연구(행정자치위원회 소관실국 조례 중심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2020.9., 112면 참조.

2) 기본원칙(안 제3조제4호 신설)

- 기본원칙은 조례의 목적규정에서 나타내지 못한 이념이나 기본방향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강조하려는 것인바, 안 제3조제4호를 신설하여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적인 이념과 방향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본원칙) (생략) 1. ~ 3. (생략) <u><신설></u>	제3조(기본원칙) (생략) 1. ~ 3. (생략) 4. 시민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3)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제1항)

- 안 제5조제1항은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사회의 여건과 환경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통상 5년 마다 수립하고 있는바,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3년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살펴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또한, 동조 제3항에서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종합계획(「스마트도시법」 제4조)⁵⁾과 전자정부 기본계획(「전자정부법」 제5조)⁶⁾, 3년 단위로 수립하는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5) 「스마트도시 조정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 등(이하 “스마트도시건설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5년 단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6) 「전자정부법」 제5조(전자정부기본계획의 수립) ①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의 구현·운영 및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의 기관별 계획을 종합하여 전자정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⁷⁾)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관련계획들과의 수립주기를 맞출 필요는 없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4) 스마트도시위원회(안 제7조 및 제8조)

-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동 조례 제7조에 따른 조례상 위원회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이하 “기본계획”), 기본계획의 중요 사항 변경,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는 위원회임.

○ 스마트도시위원회 설치근거

- 근거법령 : 「서울특별시 스마트 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7조

○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

- 기능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의 중요사항 변경, 주요 정책의 추진성과 평가,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 구성 : 25인 이내(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
 - 내부위원(2명) :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 위촉위원 :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 회의진행 : 위원장의 소집이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
- 심의의결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현행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7조제2항은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고, 위원 정수를 30명 이내로 증원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7)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조(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위원 정수 증원은 공동위원장 2명 중 1명을 서울특별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확대(당연직 위원 변경: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 스마트도시정책관, 교통·안전·환경·복지·경제·행정 분야 등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에 따른 것임(안 제7조제3항).
- 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여 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스마트도시 정책이 정보화 뿐만 아니라 도시의 교통, 안전, 환경 등 시정 전반의 정책에 영향을 미치므로 스마트도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스마트도시 서비스가 상호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당연직 위원 확대는 스마트도시 정책과 행정을 중요시하며,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조례의 연혁을 살펴보면, 「서울특별시 정보화 기본조례」에서는 위원회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수를 31명 이내, 위원회 간사를 과장(4급)으로 하고 있었으나 (제7조 참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로 전부개정(2019.3.28. 시행) 되면서 위원회 위원장을 시장에서 민간위원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간사를 과장(4급)에서 사무관(5급)으로 변경하였음. 이에 대해 당시 검토보고(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9.3.5.)에서 위원회의 위상 약화와 심의기능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지적한 바 있음.

〈 현행과 개정안에 따른 스마트도시위원회 구성 변경 〉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위원수		25명 이내	30명 이내
위원장		위촉직 위원장 1명	시장, 위촉직 위원장 1명(총 2명)
부위원장		위촉직 부위원장 1명, 스마트도시정책관	변동 없음
위원	위촉직 위원	학계, 기업, 민간단체,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중에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변동 없음
	당연직 위원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스마트도시정책관, 교통·안전·환경·복지·경제·행정 분야 등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간사		담당 사무관(5급)	부서의 과장(4급)

현행	개정안
<p>제7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정책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p> <p>1. ~ 4. (생략)</p> <p>② 위원회는 <u>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u>을 포함하여 <u>25명 이내</u>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u>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u>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u>호선</u>하며,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p> <p>1. (생략)</p> <p>2. 당연직 위원 : <u>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u></p> <p>④ (생략)</p> <p>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u>담당사무관</u>이 된다.</p> <p>⑥ (생략)</p> <p>제8조(위원회 운영) ① <u>위원장이</u>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② ~ ⑤ (생략)</p>	<p>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u>공동위원장 2명</u> ----- ----- <u>30명 이내</u>-----.</p> <p>③ ----- -----<u>위원장은</u> <u>시장과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u> <u>(互選)하는 사람이 되고,</u> ----- -----<u>호선(互選)</u>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스마트도시정책관, 교통·안전·환경·복지·경제·행정 분야 등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u>부서의 과장</u>-----.</p> <p>⑥ (현행과 같음)</p> <p>제8조(위원회 운영) ① <u>위원장은</u> 위원회를 대표하고 <u>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u> 위원장이 ----- ----- -----.</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 다만, 위원회 위원 정수를 25명 이내에서 3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와 위원 정수가 30명 이내 짝수로 심의·의결시 찬반에서 같은 숫자가 되는 경우(가부동수)를 피하기 위해 가급적 홀수로 정하도록 하는 위원회 정수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규정하고, 안 제7조 제3항은 위원회 위원장의 선출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시장과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것으로 혼동할 여지가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이해하기 쉽게 수정할 필요가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개 정 안	수 정 의 견
<p>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u>공동위원장 2명</u> ----- ----- <u>30명 이내</u>-----.</p> <p>③ ----- -----<u>위원장은</u> <u>시장과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u> <u>(互選)하는 사람이 되고,</u> ----- -----<u>호선(互選)</u> -----.</p>	<p>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u>공동위원장 2명</u> ----- ----- <u>30명 이내</u>-----.</p> <p>③ ----- -----<u>위원장 1명은</u> <u>시장이 되고, 다른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u> <u>1명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u> <u>(互選)하는 사람이 되고,</u> ----- ----- -----.</p>

-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최근 3년간 위원들의 회의 참석율을 살펴보면, 온라인 (서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참석율이 저조한 바(평균 58.2%), 참석률 제고를 위한 독려 방안과 함께 효과적인 위원회 운용을 위한 제도적 보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겠음(현재 위원회 명단 <붙임 1> 참조).

○ 스마트도시위원회 개최실적(2018년부터 2021년 4월까지)

일시	회의개최명 (차수)	참가자	참석률	안건	정책반영내용	온라인 개최여부
'18.3.30	정기회의 (2018-1차) ※서면심의	김○○ 등 17명	65.3%	○ 2018 정보화 시행계획 심의 ○ 2018 웹접근성 시행계획 심의	○ 2018 정보화시행계획 시행 ○ 2018 웹접근성 시행계획 시행	온라인 (서면)
'18.4.30	자문회의 (2018-2차)	구○○ 등 12명	46.2%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전략 수립 자문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전략 수립 반영	
'18.7.18	자문회의 (2018-3차)	김○○ 등 11명	47.8%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수립 자문 ○ 2019년 주요사업 예산안 자문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수립 반영	
'18.12.21	정기회의 (2018-4차)	이○○ 등 17명	70.8%	○ 위원회 재구성에 따른 위촉식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자문	○ 위원(19명) 신규 위촉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수립 반영	
'19.3.29	정기회의 (2019-1차)	이○○ 등 15명	71.4%	○ 2019 웹접근성 시행계획 심의 ○ 디지털재단 발전방향 및 기업참여사업 활성화 방안 토론	○ 2019 웹접근성 시행계획 시행 ○ 사업추진 참고	
'19.6.27	자문회의 (2019-2차)	이○○ 등 16명	72.7%	○ 2020 신규 추진 사업 제안 및 토론	○ 사업추진 참고	
'19.10.25	정기회의 (2019-3차)	이○○ 등 13명	56.5%	○ 스마트서울 네트워크 (S-Net) 구축 토론 ○ 빅데이터 통합관리 체계 구축 및 빅데이터캠퍼스 확대 운영 토론	○ 사업추진 참고	
'20.4.14	정기회의 (2020-1차) ※서면심의	이○○ 등 19명	82.6%	○ 2020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계획 심의	○ 2020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계획 시행	온라인 (서면)
'20.5.21	정기회의 (2020-2차)	이○○ 등 11명	47.8%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방안 자문 ○ 디지털 격차해소 추진과제 제안 및 토론	○ 사업추진 참고	

일시	회의개최명 (차수)	참가자	참석률	안건	정책반영내용	온라인 개최여부
'20.12.23	정기회의 (2020-3차)	임○○ 등 19명	86.4%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방안 자문 ○ 스마트도시 주요 업무 자문	○ 사업추진 참고	온라인 (화상회의)
'21. 4.2	정기회의 (2021-1차)	임○○ 등 11명	52%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방안자문 ○ 2021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계획 심의	○ 2021 서울시 정보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계획 시행 ○ 사업추진 참고	대면

5) 부문별 정책의 추진(안 제12조제2항 신설 등)

○ 안 제12조제2항은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 서비스의 구축·운영 및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 “행정서비스”란 「전자정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민원 사항 등을 처리하는 서비스, 법 제12조의2에 따른 공공서비스 및 법 제20조에 따른 전자정부 포털을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함(「행정서비스 통합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국무총리훈령 제764호 참조).

- 이는 서울 시민들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생활 속 불편을 해소 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IT 신기술을 활용한 행정서비스의 구축·운영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 환경 확대에 따라 최신 ICT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디지털서비스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으나 장애인·고령층 등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거나 디지털 행정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한 행정서비스 편의 제공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0년 실시한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취약 4대 계층(장애인·저소득층·농어민·고령층)의 디지털정보화 역량 수준은 60.3%이나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수준은 53.7%, 특히 70대 이상은 14.9%에 불과하고, 디지털

정보화 활용 수준은 74.8%이나 고령층은 71.4%로 디지털정보화 활용 수준이 가장 낮음(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2020 디지털정보격차 실태조사』, 2020.12., 19-26면 참조).

6) 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정 신설(안 제13조의2 신설)

○ 안 제13조의2 신설은 시장이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시범지구 지정을 통해 스마트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 있다고 하겠음.

- 특히, 대도시 서울은 지역마다 토지이용 및 생활 거주 특성이 상이하고 물리적 변화가 용이하지 않은 특성이 있어, 기존 도시시스템과 충돌하지 않고 융·복합이 가능한 새로운 스마트기술 적용방법이 필요하고, 지역 및 권역 단위에서 여러 번의 검증·보완단계를 거쳐 시행착오와 기회비용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서울시 차원으로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⁸⁾ 시범지구 지정을 통한 스마트도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업을 실현해 나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자 하는 조례 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하겠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u>제13조의2(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정) ① 시장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u></p>

8) 윤서연·진화연,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서울의 비전과 실현전략』,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 제298호, 2020.4.20., 12면 참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지구 조성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지구에서 추진할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도시법」 제35조, 제3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정부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고, 지정된 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육성을 지원하고, 선도적 스마트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직접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1. 인접지역의 스마트도시산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혁신성장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
2. 스마트도시서비스 및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이나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여건이 양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3. 국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용이한 지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 ⑦ 생략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시범도시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시범도시 외의 지역에서 국가시범도시와 연계하여 스마트도시 기술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실증·확산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토교통부는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 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점차 심화될 것으로 전망함. 따라서 도시문제의 효율적 해결과 함께,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新 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스마트시티가 전 세계 각국에서 빠르게 확산 중으로 혁신성장 선도사업, 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의 성과 가시화를 위하여 스마트시티 조성·확산이 필수로 세계적 수준의 ‘혁신 스마트시티’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국토교통부, 『2020 도시업무편람』, 2020.7., 171-173면 참조).

※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전략

※ 국내 신도시에 대한 스마트시티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해외진출도 활성화

① 신기술 테스트베드	② 도시 문제해결	③ 혁신 산업생태계
4차 산업혁명의 융복합 新기술을 도시에서 테스트 → 시민 피드백 리빙랩	교통, 에너지 등 각종 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서비스 구현 → 삶의 질 제고	도시 데이터 플랫폼을 활용한 新서비스 개발 → 스타트업 등 신산업 창출
▶ 선도 기술 및 서비스 ▶ R&D 실증과제	▶ 상용 기술 및 체감 서비스 ▶ 취약계층 배려정책 등	▶ 데이터 허브 구축 ▶ 규제/자금지원 등 연계

- 또한,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시범적으로 2019년부터 3년간 36억원(시비 30억원, 구비 6억원)을 투입해 스마트시티 신기술과 서비스를 실제 시민이 사는 생활현장에 집중 적용하고 관련 기업들의 기술을 실증·상용화하는 ‘스마트시티 특구’ 지정 공모 사업을 통해 성동구는 교통·안전 분야, 양천구는 복지·환경 분야의 지역현안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 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바, 동 개정조례안을 통해 제도화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계획

□ 사업개요

- 사업명 : 생활현장 스마트시티 특구 조성
- 대상 : 2개 자치구(성동구, 양천구)
- 기간 : 2019년 ~ 2021년(3년)
- 소요예산 : 3년간 총 36억원 (자치구별 18억원)
 - '19년 예산 : 시비(지방보조금) 1,000백만원, 자치구비 200백만원

□ 사업내용

- ICT 신기술 생활현장 적용 테스트베드 환경 조성(시민제안 ⇒ 기업실행)
 - 참여기업 선정(서울IoT센터) 및 서비스 실증
 - ▶ 시범·실증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행정 지원 및 서비스 관리
 - 기업이 신기술을 손쉽게 시험 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환경 조성
 - ▶ 대상지 확보, IoT 통신망(이동통신사 협력), IoT 도시데이터 관리시스템 등
- 지역현안 맞춤형 스마트시티 서비스 집중 추진(실증단계 ⇒ Scale Up)
 - 실증을 거친 첨단기술을 적용한 공공사업 실행(시·구 예산투자)

- ◆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스마트 교통서비스
 - 바닥 매립형 보조신호등과 음성안내를 활용한 스마트 횡단보도, 차량속도 데이터 기반의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방지, 긴급출동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스마트 진입로
- ◆ 지능형 사회약자 종합 돌봄 서비스
 - 모바일 CCTV와 비스피커를 이용한 취약계층 맞춤형 돌봄, 스마트 플러그 감지를 통한 독거어르신 교통사 방지, 차량번호 인지 장애인 주차구역 지킴이
- ◆ 사물인터넷 기반의 생활환경 개선서비스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모니터링, 공공시설 사용 인구분석, 연기·화재·소음·약취 감지를 통한 공공시설 환경개선, 보안등 등 시설물 고장관리 및 관내 환경 모니터링

○ 2019년 스마트시티 특구(성동, 양천)예산편성대비 투자실적

- 2019년 투자실적 : 시비 1,000백만원, 구비 1,237백만원

(단위: 백만원, '19.12.31기준)

자치구	서비스명	예산	목표	실적	비고	
성동	스마트 횡단보도	1303	2개소	14개소	자치구 예산 추가 반영 확대 설치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원격관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	200	시스템구축	30개소		
양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지킴이	187	80면	80면		
	맞춤형 스마트 보안등	450	점멸기	1,000개	2,211개	
			맞춤형 서비스	30개	32개	미세먼지신호등 17개, 로고젝터 15개
스마트플러그 어르신 돌봄 서비스	97	300개	1,200개	서비스 대상자 확대		

○ 2020년 스마트시티 특구(성동, 양천)예산편성대비 투자실적, 추진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	투자실적	예산집행 내역	추진실적 및 성과
성동구	시비 : 500,000 구비 : 100,000	시비 : 500,000 구비 : 698,000	· 스마트횡단보도 : 1,149,000 · 스마트 스쿨존 : 49,000	· 스마트횡단보도 17개소 조성 · 스마트 스쿨존 서비스 1개소 조성
양천구	시비 : 500,000 구비 : 100,000	시비 : 461,000 구비 : 235,000	· 스마트 플러그 : 89,000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관리 : 189,000 · 스마트 보안등 : 371,000 · 스마트 전기차 충전소 : 47,000	· 스마트 플러그 1,000개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정차 관리 80면 · 스마트 보안등 1,650개 · 스마트 전기차 충전소 36개소 (국토부 공모선정 30개소 추가)

○ 안 제13조의2제1항은 시범지구 지정의 목적이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지구지정의 주체는 시장이라고 정하고 있음.

- 다만, 시범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는 없는지와 이를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사항에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안 제13조의2제3항은 지정된 시범지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규정으로, 이를 통해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선도적 실증 사업 등이 가능할 것이나 이는 예산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는바, 입법기술적 측면에서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를 “필요한 행정·기술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시범지구 조성사업에는 행정·예산 등이 지원되는 특혜가 적용되는 만큼 시범지구 조성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 해당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이와 관련하여 「스마트도시법」 제35조의3에서는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목표 및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의3(성과평가 및 평가결과의 공개)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시범도시를 지정하는 경우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목표 및 성과지표 (목표의 달성도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설정한 목표와 성과지표에 근거하여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성과평가의 방법, 결과의 공개 방법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7) 세계스마트시티 기구 지원(안 제17조)

- 안 제17조는 세계스마트시티(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이하 “WeGo”라고 함) 기구 지원에 있어서 효과적인 국제부담금 지원과 집행을 도모하고, 성과 기반의 WeGo 사무국 운영 지원에 따른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명 칭 : 세계스마트시티기구(WeGO)

○ **World Smart Sustainable Cities Organization**

- 명칭변경 :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 → 세계스마트시티기구

※ 제4회 WeGO 총회('17.6월, 러시아 올라놉스크)에서 명칭변경 의결. 대외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WeGO 브랜드 명칭은 계속 사용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안 공포·시행('19.3월)

창립배경

○ **세계 전자정부 선도도시로서 국제적 역할 수행의 필요성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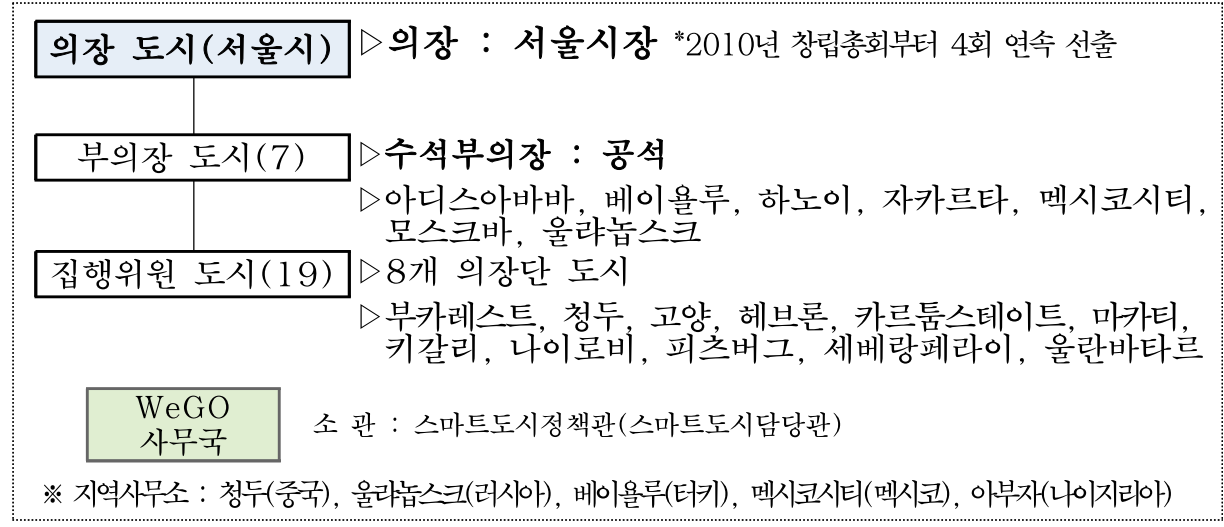
- 「세계 100대 도시 전자정부 평가」에서 서울시 7회 연속 1위 수상('03~'16)

○ **서울시 주도 세계 도시 간 전자정부 교류·촉진을 위한 국제기구 창립 추진**

회원수

○ 총회원수 : 210개 (도시 : 156, 기업 : 35, 기관 : 19)(2021. 4월 기준)

조직구성



현행	개정안
<p>제17조(세계스마트시티 기구 지원) ① (생략)</p> <p>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구 사무국의 사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기구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u>사업이 국제협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u></p> <p>③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u>사업 정산서</u>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 ----- ----- ----- ----- 있다.</p> <p>③ ----- ----- ----- -----사업 결과 및 정산서----- -----.</p>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 검토하여 지원 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⑤ -----

-----.

- 이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WeGo가 국제기구로서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비용에 대한 성과가 없으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한 지적에 따라 성과중심 운영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와 서울시의 WeGo 사무국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규정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2020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건의 사항	조치 결과
<p>○ WeGO가 국제기구로서의 효용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비용에 대한 성과가 없으므로 내년도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스마트도시담당관)</p>	<p><input type="checkbox"/> 추진상황 : 추진 중</p> <p><input type="checkbox"/>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무국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계획 수립 후 추진 중('2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협의 타당성 검토제 운영 : 사업 목적, 성과 목표 및 의장도시 기초반영 검토 - 국제부담금 지원 타당성, 집행 적정성 검토 추진 - 사무총장 및 직원별 성과 평가제 실시 ※ 평가결과 활용 : 재계약 및 연봉 협상시 활용 <p><input type="checkbox"/> 향후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협의 타당성 검토제 운영 : '21년 1월 ~ ○ 성과평가제 운영 : '21년 6월, 12월(연 2회)

※ 제298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2020년 11월 26일(목) 회의록 참조

- 한기영 위원 …… 정책관님, 지금 WeGO와 여러 가지 업무의 협조관계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부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WeGO가 조직 성격상으로는 하나의 국제기구로 규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잘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실무적인 과정에서 업무 협의나 조정 같은 것들이 여의치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 한기영 위원 아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기가 참 힘든 줄 압니다. 제가 의회 와서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WeGO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했었던 거고요. 아마 매번 회의가 열릴 때마다 계속해서 제가 WeGO에 대한 부분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지적해 왔기 때문에 어떤 게 문제점이 있는지 어떻게 앞으로 개선할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지금 신청하셨지요?
-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올해는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면서 전년 대비 한 39% 정도 절감을 해서 7억 8,100만 원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 한기영 위원 지금 보면 올해만 하더라도 전체 WeGO의 총수입이 한 13억 6,000만 원입니다. 그렇지요?
-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 정도 됩니다.
- 한기영 위원 그런데 서울시가 내는 게 12억 6,000만 원입니다. 이게 과연 국제기구인지 서울시 출연기관인지, 참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10년 동안, 이게 근래에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요 10년 동안 이어져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간이 갈수록 WeGO의 위상은 더 악화되고 조직의 근간 자체가 아예 흔들리는 상황들이 만들어진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올해도 여러 가지 특이한 상황이 있었지만 13억 6,000 중에 12억 6,000만 원이 서울시에서 낸 겁니다. 이게 과연 국제기구라고 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해마다 여기에 보면 해외출장비, 특히 민간 사무총장이 위촉된 이후로 2015년부터인가요, 2017년도부터 민간 사무총장이 위촉되었지요?

-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 한기영 위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되면서 해외출장비하고 행사비만 거의 몇 배로 늘어납니다.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이런 국외출장이라든지 행사비가 이만큼 늘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민간 사무총장이 되면서 국외출장, 행사비, 본연의 업무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뒤에 나오는 성과는 전혀 없이 여기에 해외출장비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그간 회원도시는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증가한 도시들 보면 대다수 70~80%가 다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들이고 그중에 70~80%는 또 수도가 아닌 도시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태로 계속해서 10년여 동안 이끌어 오시는 것도 사실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간 어떤 빠른 상황들이 변화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저도 2년 동안 계속해서 지적을 해왔는데도 큰 변화가 없다면 이제는 뭔가 결단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창립회원이었던, 주요 도시들이 당시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리스본, 헬싱키부터 시작해서 베를린, 파리 대부분 다 탈퇴했고요, 그리고 회비도 내지 않고 있고요.

지금 서울시에 있는 국제기구들이, 서울시에서 출연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원받고 있는 국제기구들 대다수가 외교부 출신들이 퇴직 후에 오는 하나의 뭐랄까요 전관예우 차원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교통공사 사장만 하더라도 아마 연봉이 1억 5,0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사무총장도 1억 5,000 정도 되지요, 연봉이?

-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그렇습니다.
- 한기영 위원 14명 있는 이런 조직에서 연봉 1억 5,000을 받고 퇴직 후에 와서, 서울시가 무슨 유니세프도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정말 특단의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저도 WeGO에 대해서 더 이상 다음 상임위부터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도록 우리 정책관님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도시정책관 이원목 네, 알겠습니다.
- 한기영 위원 이상입니다.

- 특히,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지난해 WeGo 공동의장제 도입을 통해 시(市) 재정지원 축소, 회비 수입 증대를 위해 선진도시 및 대기업 회원 유치를 통한 자체재원 확보 강화, 회비 납부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2020년 부터 총회 및 집행위원회 비용 부담과 관련하여 정관에 맞게 개최도시가 비용을 부담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였으나,
- 아직까지도 공동의장제도 도입은 추진 중이고, 회비징수시스템 개선을 완료 하였다고 하였으나 2020년 회비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오히려 회비 징수율은 전년대비 12.9% 감소('19년 징수율 29.7%, '20년 징수율 16.8%)한 바 WeGo 회원들의 회비 납부를 독려해 서울시의 국제부담금 비중을 낮추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2019-2020년 WeGo 회원국 회비징수 현황 >

구 분	징수대상	납부수	징수율(%)	징수액
'19년	145	43	29.7	188,551천원
'20년	184	31	16.8	176,629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회원도시들의 재정상황 악화로 '19년 대비 회비 징수율이 낮으나 지속적으로 회비 납부 독려중

○ WeGo 공동의장제 도입 등 WeGo 운영 제도 개선 계획에 따른 개선결과

□ WeGO 사무국의 공동의장제도 도입 추진 : 추진중

- 공동의장 후보도시군 검토·선정 및 1차 후보도시들에 공동의장직 요청
 - 방콕, 브뤼셀, 청두, 하노이, 자카르타, 마닐라, 멕시코시티, 모스크바 8개 우호회원 대도시에 사무총장 명의로 공동의장 제안 ('20.2월말)
- 회원도시 전체에 대해 공동의장직 요청
 - WeGo 전체 회원도시에게 공동의장 취지, 효과 등 관련 안내메일 발송 ('20.3월)

◆ 공동의장 제안결과 : 세계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회원도시들의 공동의장 요청에 대한 검토 보류,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여 재추진 예정

- 코로나기 안정 시점에 의장 후보도시들에 대해서 공동의장직 재요청 (예정)
 - 의장도시 혜택과 권한, 공동의장제도 유형 재검토 및 후보도시와 협상진행

□ 회비징수시스템 개선 : 완료

- 사무국 내 회비 총괄담당 및 도시별 담당자를 지정해 업무 책임성 강화
 - 신규 채용 직원 포함 회원별 회비 징수 담당자(8명) 지정
- 회비 납부 고지서를 분기별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변경하여 회비 납부 독려
 - 2월/5월/9월/11월 총 4차례 걸쳐 고지서 발송 및 납부 독려
- 회비납부를 담보할 수 있도록 회원 가입 절차 개선
 - 일대일 사전 심사를 통해 회비 납부 책임 설명, 납부 의지 확인 후 가입 진행

[2020년 회비징수 현황] ※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12년 이래 두 번째로 많은 회비금액 징수

구분	징수대상	납부수	징수률(%)	징수액
'19년	145	43	29.7	188,551천원
'20년	184	31	16.8	176,629천원

※ 코로나19로 인한 회원도시들의 재정상황 악화로 '19년 대비 회비 징수율이 낮으나 지속적으로 회비 납부 독려중

□ 성과기반의 사업비 지원 : 완료

- 단순 목적(회원확대, 네트워크 강화)의 국제 네트워크 사업 규모 축소
 - '20년 국제부담금 : 1,262백만원 ⇒ '21년 국제부담금: 641백만원
- 비대면 업무의 확산에 따라 온라인 방식 업무를 지원하되 성과 고려후 지원 여부 결정
 - '20년 스마트시티 지식교류 관련 웨비나 11회(2,50여명 참여), 온라인 집행위원회 개최
- 정기회의 개최 재정 지원 축소 : 정관에 의거 개최도시 부담 원칙 적용
 - 정관에 의거 개최도시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20년도 집행위원회(온라인) 모스크바 비용부담

□ WeGO 현장 개입을 통해 회비 납부에 대한 유인체계 정비 : 추진중

- 회비 미납 회원에 미납 기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회원자격 중지 등의 페널티 부과할 수 있도록 5차 총회 시 현장 개정
- 회원의 재정상황 악화로 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는 회비 일시 감면 및 당감할 수 있도록 현장을 개정하여 회비 납부 유인체계 마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재석위원 7명, 전원찬성).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종국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02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04월 02일

발 의 자 : 임종국, 김경영, 김창원,
김태수, 김평남, 김희걸,
박기열, 박기재, 박순규,
서윤기, 성흠제, 송정빈,
양민규, 이영실, 장상기,
전석기, 최 선, 최웅식,
한기영, 황규복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며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 및 스마트도시 활성화 등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을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명시(안 제1조).
- 나. 준용규정인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으로 변경(안 제2조, 안 제5조, 안 제11조).

- 다.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 위상 강화(안 제7조).
- 라.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장의 권한을 추가하는 등 관련 조항 변경(안 제8조).
- 마. 블록체인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및 제공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안 제12조제2항).
- 바. 선도적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시범지구 지정 조항 신설(안 제13조의2).
- 사. 효과적인 국제부담금 지원과 집행을 도모하고, 성과 기반의 세계스마트시티지구 사무국 운영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 변경(안 제17조).
- 아. 스마트도시 활성화를 위한 포상 조항 신설(안 제2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으로 한다.

제3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시민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5년마다”를 “3년마다”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 「국가정보화 기본법」 ”을 “ 「지능정보화 기본법」 ”으로,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을 “지능정보 사회 종합계획”으로 한다.

제7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위원장 1명”을 “공동위원장 2명”으로 하며, “25명 이내”를 “30명 이내”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위원장과”는 “위원장은 시장과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되고” 라고 하고,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하며, 제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정책관, 교통·안전·환경·복지·경제·행정 분야 등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제7조제5항 중 “담당 사무관”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여 “정보통신기술”을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로 하고,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은 투명하고,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시민이 디지털 행정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정) ① 시장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지구 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범지구 조성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지구에서 추진할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 중 “있으며, 사업이 국제협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제17조제3항 중 “사업 정산서”를 “사업 결과 및 정산서”로 하고,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제1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 검토하여 지원 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18조제2항 중 “호선”을 “호선(互選)”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포상)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이 수립 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와 그 위원은 제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스마트도시</u>를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행정 전반에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능정보화 등 정보화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마트도시법"이라 한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등 그 밖에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관련 법령에 따른다.</p>	<p>제2조(정의) ----- ----- ----- ---, 「지능정보화 기본법」 --- ----- -----.</p>
<p>제3조(기본원칙) (생략) 1. ~ 3. (생략) 4.<신설></p>	<p>제3조(기본원칙)(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u>4. 시민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를 실현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u></p>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스마트도시법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가정보화 기본계획과 「전자정부법」 제5조에 따른 전자정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정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 4.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

--- 3년마다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

-----.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② ----- 공동위원장 2명-----
----- 30명 이내로 -----
-----.

③ -----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은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부위원장 1명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

1. (생략)
2. 당연직 위원 : 스마트도시정책관,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 ④ (생략)
- 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 ⑥ (생략)
-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촉직 부위원장, 당연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 ⑤ (생략)
- 제9조(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시장과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되고,-----
호선(互選)-----
-----.

1. (현행과 같음)
2. ----- : 스마트도시정책관, 교통·안전·환경·복지·경제·행정 분야 등 주요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 이내, 서울디지털재단 이사장

- ④ (현행과 같음)
- ⑤ -----

-----부서의 과장-----.

- ⑥ (현행과 같음)
-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9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

호선한다.

③ ~ ④ (생략)

제11조(스마트도시책임관) ① 시장은 정책의 수립 및 시행, 사업의 조정,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2항 등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생략)

제12조(부문별 정책의 추진) ①(생략)

<신설>

②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블록체인, 클라우드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 관련 정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스마트도시정책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① (현행과 같음)

② -----

호선(互選)--.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스마트도시책임관) ① -----

---,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부문별 정책의 추진) ①(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투명하고, 위변조 방지가 가능한 첨단 정보통신기술 등을 이용하여 시민이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

----- 정보통신기술 및 스마트도시서비스 -

-----.

<신 설>

제17조(세계스마트시티 기구 지원)

- ① (생 략)
-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경비 등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

제13조의2(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

- 정) ① 시장은 선도적 스마트도시의 조성, 관리·운영,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스마트도시 시범지구(이하 “시범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지구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1. 시범지구 조성의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2. 시범지구에서 추진할 스마트도시서비스에 관한 사항
 - 3.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시범지구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세계스마트시티 기구 지원)

- ① (현행과 같음)
- ② -----

우에는 기구 사무국의 사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거나 기구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사업이 국제협력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 연도 개시 5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지원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사업 정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신 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사무총장으로부터 사업 계획서 및 사업 정산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울특별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있다.

③ -----

사업 결과 및 정산서-----
-----.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 결과 및 정산서를 검토하여 지원 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⑤ -----

-----.

제1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운영)

① (생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 ④ (생략)

<신 설>

제1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호선(互選)-----.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5조(포상)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 발굴,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문서번호

2021032500000010

미첨부 사유서 (2호)

요청인 : 임종국 의원

담당 :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백소영 주무관

접수일 : 2021. 03. 25.

회신일 : 2021. 03. 31.

내용문의 : 02-2180-7954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목 차

1. 비용발생 요인
2. 미첨부 근거 규정
3. 미첨부 사유
4. 작성자



서울특별시의회 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Seoul Metropolitan Council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조의2(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정), 제25조(포상)에 따라 비용 발생
 - ※ 같은 조례안 제1조는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을 구체적으로 목적 규정에 명시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 같은 조례안 제2조, 제5조 제3항, 제11조 제1항은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 같은 조례안 제3조 제4호는 기본원칙을 추가한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 같은 조례안 제7조 제2항, 제3항, 제3항 제2호, 제5항은 시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스마트도시 정책 심의를 위한 스마트도시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 같은 조례안 제8조 제1항은 위원장의 권한을 추가하여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운영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 같은 조례안 제12조 제2항, 제3항은 정보화사업을 위한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 같은 조례안 제17조 제2항, 제3항, 제4항은 효과적인 국제부담금 지원과 집행을 도모하고, 성과 기반의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사무국 운영 지원에 따른 관리 감독 체계 마련을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 및 신설하는 것으로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 제13조의2(스마트도시 시범지구 지정) 신설에 따라 스마트도시 시범지구를 지정하여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의 내용과 범위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 제25조(포상) 신설에 따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포상금액 및 대상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조도형

사업평가팀장 이정수

주 무 관 백소영

☎ 02-2180-7954

e-mail : thdud36@seoul.go.kr